

제주지방법원 2023. 5. 1 선고 2022나136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3. 5. 1 선고 2022나13698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0가단6902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

변론종결 2023. 4. 3.

판결선고 2023. 5. 1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. 6. 23. 선고 2020가단6902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. 9. 25. 접수 제83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 인용

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A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(1)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, 갑 제8호증, 을 제2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.

① A은 2005. 12. 21. 전남편 G와 이혼하였다. A은 2016년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단계에 이르렀다. A은 피고에게 재혼하여 함께 살게 될 집의 소유권 1/2

지분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, 피고는 2017. 2. 28.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.

② A은 2018. 4. 6. 피고와 혼인신고를 올렸으나, 2019. 9. 25.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. 한편 A은 같은 날 위 ①항과 같이 이전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9. 2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③ 한편, H 주식회사로부터 A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A에게 대출 채무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면서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에도 A이 변제하지 않자 A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46301호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5. 7. “A은 원고에게 47,659,646원과 그 중 16,134,422원에 대하여는 2019. 6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.

(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원고로부터 수차례 대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, 양수금 청구의 소까지 당하자, 피고에게 결혼 전에 이전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“증여”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, 위 이전등기를 한 당일 A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고 하여, 위 등기원인인 “증여”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, 달리 위 등기가 재산분할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방선옥, 판사 황방모, 판사 이황선

별지